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48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추경호·김상훈·김선교

김용판 · 조명희 · 윤창현

김예지 • 이주환 • 성일종

백종헌 · 엄태영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 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34조제1항).
- 나.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손금 산입을 위한 지배주주등의 양도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
- 라.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52조).
- 마.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 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6제1항).
- 바.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 장함(안 제121조의27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	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
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	세특례) ①
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u>2021년</u>	<u>2024년</u>
<u>12월 31일</u> 이전에 자산을 양도	12월 31일
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	
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 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 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 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 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 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u>.</u>
1

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생략)

② ~ ⑦ (생 략)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반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면제반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u>2024년 12월 31일</u>
(-2. 2. 2. 2. 4.)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
한 과세특례) ① <u>2024년 12월</u>
31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 략)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 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제10조에 따른 적기시 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 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 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 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 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 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1 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 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 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
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u>2024</u>
<u>년 12월 31일</u>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 2. (생략)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 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 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

1. • 2.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
한 과세특례) ①
2024년
<u>2024년</u> 12월 31일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지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 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